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지방우정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14명(9급 14명)을 감축하고,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의 명칭을 우정정보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우정사업본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우정사업정보센터”를 “우정정보관리원”으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우정사업정보센터”를 “우정정보관리원”으로 한다.

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우정사업정보센터는”을 “우정정보관리원은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센터장)”을 “(원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센터장”을 각각 “원장”으로 한다.

① 우정정보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.

제19조 중 “우정사업정보센터”를 “우정정보관리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33,082”를 “33,06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3,082”를 “33,068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33,058”을 “33,044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우정사업정보센터”를 “우정정보관리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”를 “우정정보관리원으로부터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“우정사업정보센터”를 각각 “우정정보관리원”으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우정사업정보센터는”을 “우정정보관리원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우정사업정보센터”를 “우정정보관리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우정사업정보센터는”을 “우정정보관리원은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소속기관) ①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<u>우정인재개발원 · 우정사업정보센터</u> 및 <u>우정사업조달센터</u> 를 둔다.	제13조(소속기관) ① ----- ----- ----- <u>우정정보관리원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장 <u>우정사업정보센터</u>	제4장 <u>우정정보관리원</u>
제17조(직무) <u>우정사업정보센터</u> 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	제17조(직무) <u>우정정보관리원</u> 은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센터장) ① <u>우정사업정보센터</u> 에 센터장 1명을 둔다.	제18조(원장) ① <u>우정정보관리원</u> 에 원장 1명을 둔다.
② <u>센터장</u>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	② <u>원장</u> ----- -----.
③ <u>센터장</u> 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 · 감독한다.	③ <u>원장</u> ----- ----- -----.
제19조(하부조직)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<u>우정사업정보센터</u> 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	제19조(하부조직) ----- ----- ----- -- <u>우정정보관리원</u> ----- -----

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령으로 정한다.	----- ----- -----.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29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33,082</u>	<u>33,068</u>	-14
일반직 계	<u>33,082</u>	<u>33,068</u>	-14
•	•	•	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33,058</u>	<u>33,044</u>	-14
•	•	•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73